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제2장 직제

제2조(전공주임교수)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교과의 수업과 연구지도 및 제반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교내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4. 각종 학술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강사제청) 교과운영상 교외의 자를 강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공주임교수가 개강 1월전에 시간강사 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전공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강사 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간사) 대학원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9.6.26.>

제3장 입학

제7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합격사정) 합격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6.26.>

제9조(전공별 사정) 삭제 <2009.6.26.>

제10조(대학원위원회 사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2009.6.26.>

1.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한다.
2. 전공별 재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제11조(입학시험과목) 대학원의 입학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답시험 또는 구술시험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을 시험(다만, 필요한 경우 영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 : 지원자의 대학성적과 전공에 관한 지식 및 학문연구의 능력과 적성, 인성을 심사(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면접만 실시한다)

제12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입학이 허가된다.

제13조(재입학) ①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자는 등록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점인정원(소정양식)
 3. 재입학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업, 학점, 시험 및 학위수여

제1절 수업 및 학점

제14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1학점 내지 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8.24.>

②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 24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26., 2024.6.12.>

과정 \ 구분	공통필수	전공선택	계
석사과정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6과목이상)	24학점

③ 제2항에 의한 최저학점 24학점의 산정 시 공통필수과목에서 취득한 8학점 초과학점은 전공선택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4.6.12.>

④ 다른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 시 전공분야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6.26., 2024.6.12.>

제15조(교과과정 선정) 전공주임교수는 전공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교과과정의 개정) ① 교과과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과정을 개정할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교과목 개설) 전공주임교수는 개강 1월전에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선정하고 설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절 수강신청 및 전공선택의 변경

제18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초 개강일 전까지 본 대학원 수강신청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수강신청과목변경) ① 수강신청을 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설강과목의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으로부터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학기초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제20조(재수강) ①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재수강등록을 필한 후 재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재수강등록금은 재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학위논문학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4.>

제21조(전공선택의 변경)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 또는 제3차 학기 등록기간내에 전공주임 교수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성적 및 시험

제22조(성적계산) 학칙 제26조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성적과 출석성적을 합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제23조(출석성적) 출석성적의 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의 출석이 강의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4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5조(학점인정)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26조(학점의 특별인정) 전공변경자 및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학점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새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인정한다.
2.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유사전공과목 3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7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제28조(수료학점 및 인정시기)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는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9조(과정수료인정학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균학점의 기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업성적의 평균성적을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성적정정)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적정정원(소정양식)
2. 정정사유서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31조(결시신청)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 결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제32조(추가시험) 학칙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시험으로서 각 교과목에 대한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 나. 전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이하인 자(다만, 출석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 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제33조(학위신청자격시험) ①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신청자격시험의 과목, 기간(시간)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 학기초 1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 공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③ 학위신청 자격시험(종합시험)은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전공주임교수추천서(소정양식)
3. 소정의 전형료 납부

⑤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2과목으로 하며 그 중 1과목은 공통필수과목, 또 다른 1과목은 전공선택과목으로 하고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4.6.12.>

⑥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6.12.>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2.>

<호 삭제 2024.6.12.>

1.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중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2.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⑧ 시험위원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절 논문·학점 학위제 <개정 2016.2.11.>

제34조(학위논문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신청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 인준한다.

제35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강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대학원생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2차학기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을 하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7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전공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38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3차 학기부터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3월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4차수 수업일수 2분의 1선 전까지 학점학위제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위심사위원회(세부운영사항은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학위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2.11.>

제39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여 영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 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학위논문 제출시기)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2회로 한다.

제41조(학위논문 제출시한) 학위논문 제출시한은 입학후 8년 이내로 한다.

제42조(학위논문 제출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에 학위논문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심사료 및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소정양식)
2. 지도교수추천서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제43조(논문심사위원선정) ① 논문심사위원회의 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 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을 위촉한다.

제44조(논문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5조(논문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해외여행, 질병, 사고, 신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2.11.>

제46조(논문의 예비심사)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학술이론의 타당성, 연구의 가치, 내용 및 체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심사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참석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상 필요할 경우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학위논문 제목 변경) 학위청구논문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16.2.11.>

제48조(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자구수정을 명할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9조(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내에 이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50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1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2조(논문심사결과보고 및 자격사정) ①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 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제53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 편제 및 서술방법 등은 대학원논문작성법에 따른다.

제54조(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내에 5부(하드카버)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제1항의 논문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논문학위 수여)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취득학점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6조(학점학위신청자격) ① 학점학위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위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신청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6.2.11., 2024.6.12.>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자격을 심의 인준한다.<신설 2016.2.11.>

제57조(학점학위 지도교수) 학점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준하여 학위연구보고서 작성 등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2.11.>

제58조(학점학위 필요학점) ① 학점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기본 24학점 이외에 6학점 이상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2.11.>

② 추가 학점의 구성 및 인정 절차는 각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6.2.11.>

제59조(학점학위 청구절차) ① 학점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에 정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시기에 학점학위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2.11.>

② 각 전공에서는 학위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학위수여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학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2.11.>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신설 2016.2.11.>

제60조(학위연구보고서 제출 및 심사) ① 학점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학위연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심사의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2.11., 개정 2017.5.1.>

② 학점학위 연구보고서의 심사는 예비심사 없이 본심사로 진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심사는 1회 이상 추가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6.2.11.>

③ 본심사에서는 연구보고서의 내용 및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2.11.>

④ 연구보고서의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신설 2016.2.11.>

제61조(학점학위수여)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점학위제 신청자로서 학위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6.2.11., 2024.6.12.>

②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6.2.11.>

제62조(학위연구보고서 제출부수)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연구보고서는 소정 기일 내에 5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2.11.>

② 제1항의 연구보고서 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2.11.>

제63조(학위수여 제한) ① 학생은 학위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학 후 8년 내에 학위를 수여받아야 한다.<신설 2016.2.11.>

② 학위는 학칙 제34조 학위 중 하나의 학위만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6.2.11.>

제64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학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65조(휴학절차)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휴학자는 징소집영장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3.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66조(휴학의 시기 및 기간) ① 일반휴학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에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 일반휴학기간중 입대한 자는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은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계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복학절차)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휴학확인서(소정양식)
3.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

② 기간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제68조(복학생등록) 학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2절 징계, 퇴학 및 제적

제69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 처리한다.

1.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
2. 장학금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위조자
3.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제적 처리한다.

1.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제6장 연구과정

제71조(연구과정의 목적)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74조(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개정 2024.6.12.>

구 분 \ 과 정	공통필수	전공선택	계
연구과정	2학점(1과목)	10학점(5과목)	12학점(6과목)

제75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76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대학원장은 연구생에게 지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
- ③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7장 장학금

제77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 선발시의 성적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장학금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8조(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호, 1998.10.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 1998.1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 1999.2.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 1999.11.3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00.5.8.>

①(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은 개정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47호, 2001.6.2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2002.7.3.>

①(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 발령당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료한 학생에게도 개정세칙 제41조에 의한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적용한다.

부칙 <제56호, 2003.2.28.>

- ①(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세칙 발령당시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종전 학칙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82호, 2007.8.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 2008.2.29.>

- ①(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68조제1항은 200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호, 2009.6.2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2011.12.1.>

- ①(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중 공학대학원 전자공학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필수과목을 정보통신대학원 전자공학전공 입학생이 이수 시 전공필수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부칙 <제129호, 2016.2.11.>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학칙 제32조에 의해 시행한 학점학위제 신청 및 학위연구보고서 제출, 심사 등은 이 세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호, 2017.5.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 2018.8.2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 2024.6.12.>

-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재적생에게 적용되며, 이수한 전공필수 교과목은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수료생에게는 종전의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정대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전공 석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장 (학위) ○ ○ ○

인천대학교 총장 (학위) ○ ○ ○

정대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 ○ ○ 전공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장 (학위) ○ ○ ○

인천대학교 총장 (학위) ○ ○ ○

정대원 제 호

연구 실적증명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전공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장 (학위) ○○○